

당진 센트레빌 르네블루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내역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 수청1지구 43B-1L
- 공급규모 : 지하 3층, 지상 26~29층 9개동 총 아파트 1,1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아파트) : 지상1층 ~ 지상29층 / 주차장 : 지하1층~지하3층 / 주민공동시설 : 지상1층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예정)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	74.9585A	74A	74.9585	24.0102	98.9687	46.2901	145.2588	43.1135
	-	84.9699A	84A	84.9699	26.7526	111.7225	52.4728	164.1953	48.8717
	-	84.9169B	84B	84.9169	27.2447	112.1616	52.4401	164.6017	48.8412
	-	99.9861A	99A	99.9861	31.0788	131.0649	61.7459	192.8108	57.5085
	-	99.8911B	99B	99.8911	32.3763	132.2674	61.6873	193.9547	57.4539

합 계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구 분		74A	84A	84B	99A	99B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10	5	-	-	18
	장기복무 제대군인	2	5	3	-	-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5	3	-	-	10
	중소기업 근로자	3	13	7	-	-	23
	장애인(당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6	20	10	-	-	36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방법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2020년 10월 12일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www.dangjin-centreville.co.kr)
건본주택 개관(예정)일	2020년 10월 중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442-18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0년 10월 22일 (예정)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2020년 10월 30일 (예정)	당사 건본주택 및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방법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9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충청남도청,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 충남서부보훈지청 복지팀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10.12.(월)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홈페이지(www.dangjin-centreville.co.kr)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대상자(예비자 포함) 명단을 2020.10.13.(화) 12시(정오)(예정)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442-18번지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dangjin-centreville.co.kr
- 분양문의 : 041-355-1300